

업무상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 개념의 변증법

Yves Saint-Jours (프랑스 페르피냥대학교 전 명예교수)

이른바 석면사건¹⁾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을 조직함에 있어서 사전예방조치와 주의조치를 준수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들이 얼마나 저항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사건에서 프랑스 대법원은

* 편집자 주: 이 글은 프랑스 노동법 학술지 『노동자의 법(Droit ouvrier)』 2003년 2월호에 소개된 글을 번역한 것이다[원문: Saint-Jours, Y.(2003), “La dialectique conceptuelle de la faute inexcusable de l'employeur en matière de risques professionnels”, Droit Ouvrier, Février 2003, pp.41~45]. 이 글은 프랑스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최근 판결 중 가장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받는 석면사건 판결(2002)을 분석한 것이다.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라 법학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리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프랑스 대법원이 어떤 개념을 고민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한 고민이 산업재해의 예방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독자들이 참고문헌을 찾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이 글의 각주에는 원문의 참고문헌을 양식 수정 없이 그대로 실었다.

1) 필자의 연구를 참고 바란다. “L’amiante : de la prévention négligée aux conséquences induites”, Droit Ouvrier, 1999, p.486 및 이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참고문헌 참고.





우선 기업이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해 노동자가 걸리게 된 직업병과 관련하여,²⁾ 이어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³⁾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사용자는 노동자와 체결한 노동계약에 근거하여 노동자에 대해 결과적 안전의무[안전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노동자가 노출된 위험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이를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 위험에 맞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의무의 위반은 사회보장법전 L.452-1조에서 규정한 변명할 수 없는 과실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바도 있거니와,⁴⁾ 이는 법적 맥락의 변화가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faute inexcusable)” 개념을 새롭게 재해석하는데 미친 영향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개념 해석의 적용범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법적 맥락의 영향

사용자 또는 그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노무를 관리하는 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 개념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잔잔한 긴 강이 아니라 힘겹기 그지없는 장애물 극복 훈련과 같았으며, 지난 세기 이러한 역경을 이겨낸 피해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변명할 수 없는 과실 개념은 [산재보상의 근거를 업무에 내재된 위험에서 찾는가, 아니면

2) Cass. soc., 28 février 2002 Bull. V, n° 81, p.74(11건의 판결). 이 판결들에 대해서는 Benmakhlouf의 평석(Gaz. Pal., 3-5 mai 2002, p.3; JCP 2002 ed. G II 10053) 외에도 다음 문헌 참고. Arnaud Lyon-Caen, Dr. soc., 2002, p.445; F. Meyer, Dr. Ouv., 2002, p.166; L. Milet, RPDS, 2002, n° 683, p.91; Picca et Sauret, P.A du 27-3-2002, p.15; Michon, Teissonnière et Topaloff, SSL du 11 mars 2002; Garand et Rozec, SSL du 27 mai 2002; Montheillet, RJS 5/02, p.404; Morvan, RJS 6/02, p.495; G. Vachet, TPS, juin 2002, chron. p.8; X. Prétot, D., 2002, jur. p.2696, etc.

3) Cass. soc., 11 avril 2002, D., 2002, jur. p.2215, note Y. Saint-Jours, RPDS, 2002, p.375, n. L. Milet, Cass. soc., 23 mai 2002, SSL, 2002, n° 1078, p.14, Cass. soc., 27 juin 2002, CEA de Cadarache(arrêt n° 2226 FSP), Cass. soc., 11 juillet 2002, Vve Ferreira Duarte(arrêt n° 2402 FSP).

4) 다음 문헌 참고. Arnaud Lyon-Caen, Dr. soc., 2002, p.445, 상기 인용.

행위자의 과실에서 찾는가를 둘러싼] 위험주의와 과실주의 사이에 진행된 논쟁을 종결하는 역사적 타협에서 생겨났다. 18년 동안 지속된 의회 논쟁 끝에, 위험주의에 입각하여[즉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산재보상에 관한 1898년 4월 9일 법이 통과되었다.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은 해당 과실의 귀책사유가 피해자 본인이나 사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배상금을 감액하거나 증액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정치적 타협을 쉽게 만들기 위해 입법부는 해당 개념을 정의하지 않는 용의주도함을 보였고, 이를 정의하는 것은 악착같은 보험회사에 맞서는 판사의 몫으로 오롯이 남겨졌다. 그리고 이러한 타협은 보상의 예방적 차원을 고려하기 전에, 오로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맥락 속에서만 이루어졌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만 한정된 초기의 정의

판례에서 변명할 수 없는 과실 개념의 원초적 모호함을 해소하고,⁵⁾ 이에 대해 “작위 또는 자발적 부작위, 작위자 또는 부작위자가 가지고 있었어야 할 위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체의 정당한 사유의 부재에 기인하며, 동시에 의도적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고의적 과실과는 구분되는, 예외적으로 중대한 과실”⁶⁾이라는 복합적이고 제한적인 정의를 부여하는 데 40년 이상이 걸렸다.

이와 같이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의 개념을 피해자와 사용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용자나 그 대리인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을 오랫동안 노무관리상의 과실로 한정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또는 그러한 한정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는 사이에 업무상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은 전적으로 제거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점차 강화되자 판례는 기이한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는 보루를 세우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즉,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이나 형사처벌이 사용자

5) 다음 문헌 참고. Renée Jaillet, *La faute inexcusable en matière d'accident du travail et de maladie professionnelle*, LGDJ, 1980, p.95s.; Y. St-Jours, *La faute dans le droit général de la Sécurité sociale*, LGDJ, 1972, p.155s.

6) Cass. ch. réun., 15 juillet 1941, DC, 1941, p.117, note A. Rouast, JCP, 1941.II.1705, note J. Mihura.



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의 인정 여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일체 배제한 것이다.

한편으로 형법 판례는 1967년까지 산업재해의 피해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즉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의 구성요소를 찾는 데 기여하기 위해, 개인의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침해(현행 형법 222-19조 및 222-20조)에 근거하거나 산업안전보건규정의 위반(노동법전 L.263-2조 및 L.263-2-1조)에 근거하여 사소청구인(partie civile)[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인의 자격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고,⁷⁾ 그 이유로 L.451-1조(옛날 사회보장법전 L.466조)에 의거하여 사회보장법원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판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원이라는 점을 들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보장법전 L.451-1조(이전의 L.46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까지 사회보장법 판례는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과 관련해서 형사재판의 판결이 사회보장재판에 기관력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형사 무죄판결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적용하고, 반대로 형사 유죄판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언제나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당 원칙을 변칙적으로 적용했다.⁸⁾

변화는 2001년이 되어서야 일어날 수 있었다. 그것은 다음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작용한 결과였다.

-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산업재해 보상과정에 위험예방을 점진적으로 도입한 것.
-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조직에서 주의를 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이종의 의무가 있음을 노동법전과 형법전이 규정한 것.
-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 측에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면, 사회보장

7) Cass. crim., 26 janvier 1967, Bull. crim., p.101, n° 42, Gaz. Pal., 1967-1-133, confirmant Paris 10 juillet 1965, Gaz. Pal., 1965-2-282. 이는 불가피한 해결책이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사소청구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프랑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ORTF)의 무용단장인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이 노동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부에 달려 있었는데, 이 사안을 담당한 민사법원은 “형사가 민사를 정지한다”라는 원칙 때문에 판결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법절차가 가로막혔던 것이다. 다음의 문헌도 참고 바란다. Cass. crim., 15 octobre 1970, Bull. crim., p.641, n° 268 그리고 이후 판례.

8) Cass. soc., 12 juillet 2001, Bull. civ. V, n° 267, D., 2001, jur. p.3390, note Y. Saint-Jours, Dr. Ouv., 2002, p.400.

법전 L.452-1조에 의거하여, 심지어 비고의적인 형사상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형사소송 법이 최근에 제거한 것.⁹⁾

예방과 보상 간의 상호작용 관계의 점진적 반영

1946년 10월 30일 법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관리가 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으로 이전되었는데, 이 법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 보험료에 위험예방의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1976년 12월 6일 법에 이르러서야,¹⁰⁾ 위험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 개념의 법적 효과가 재구성되기 시작했다.¹¹⁾

시간이 흐르며 여러 법률이 이러한 취지를 드러냈다.

- 1976년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위험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전부,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전부(사회보장법전 L.452-3조의 제 2항)를 보상하도록 하였다.
- 1982년에는 피해자 본인 또는 노동조건 및 보건안전위원회 소속 노동자위원이 사용자에게 사전에 경고했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법률이 규정한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의 개념을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개정하였다(노동법전 L.231-8-1조).¹²⁾

9) 2000년 7월 10일 제2000-647호 법률 제2조에서 유래된 형사소송법전 4-1조는 비고의적 범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 Loi n° 76-1106 du 6 décembre 1976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accidents du travail. 다음 문헌 참고. H. Martin, “Le nouveau régime applicable à la faute inexcusable de l’employeur”, Dr. soc., n° spécial, mars 1977, S. p.94; Y. Saint-Jours, “Prévention et responsabilité en matière d’accidents du travail”, D., 1977, chron. p.186; J. Costa-Lascoux “L’intégrité corporelle des travailleurs et la responsabilité pénale du chef d’entreprise depuis la loi du 6 décembre 1976”, Dr. Ouv., 1978, p.7.

11) Y. Saint-Jours, “Le remodelage des effets de la faute inexcusable en matière d’accidents du travail”, JCP, 1987, ed. E II 14972.

12) Cass. soc., 17 juillet 1998, Bull. civ. V, n° 398, Dr. Ouv., 1999, p.26, n. L. Millet.



- 1990년에는 기간제노동자 및 파견노동자가 특별한 위험이 있는 근무지에 배치되었으나 강화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의 피해자가 된 경우, 이들에 대해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을 추정하였다(노동법전 L.231-8조 제3항).¹³⁾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에서 기인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과 위험예방 간의 상호관계는 이처럼 점점 더 긴밀해졌다. 이는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 있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온전함을 보장해야 하는 사용자의 계약상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결과적 안전의무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석면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약상 의무가 직업적 신중함에 내재된 사전 예방조치와 같이 계약의 성격 그 자체로 인하여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제와 같은 법률의 적용에 의해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프랑스 대법원은 이처럼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의 개념을 전향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노무관리에 있어서나 거기에서 과생되는 신중함의 규칙과 보건안전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있어서 일보를 전진했다.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더 조화를 이루는 기조로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으나, 한편에는 불확실성이 새겨져 있다.

■ 새로운 개념 해석의 적용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의 개념을 새롭게 재해석한 것이 법적 측면에서는 “혁명적”인 의미가 있으며 산업재해의 예방에도 유의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개념 해석의 실제 적용은 산재보상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좁게 국한될 위험이 남아 있다.¹⁴⁾

13) Cass. soc., 4 avril 1996, Dr. Ouv., 1996, p.366, note Y. Saint-Jours, Dr. soc., 1996, p.636, note Claude Roy-Loustanau, Cass. soc., 27 juin 2002, Dr. Ouv., 2003, p.16.

14) 이에 대한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의 반응은 해당 단체의 부회장인 드니 케슬러(Denis Kessler)의 관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 신문기사 참고. “Pour une réforme des régimes d’indemnisation des accidents du travail”, *Les Echos*, 3 avril 2002, p.64.

법적 적용

이전의 판례에 따르면, 계약상 안전의무는 일종의 수단채무[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아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경우에는 채무의 이행으로 간주된다], 즉 수단적 안전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규정의 미준수와 직원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족은, 심지어 특정 규정과 관계없이도, 그 예외적인 중대성으로 인해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의 구성요소로 이미 인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¹⁵⁾ 계약상 안전의무는 결과채무[예정된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된다], 즉 결과적 안전의무로 해석됨으로써, 이제 사용자가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혹은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근거를 구성하게 되었다. 파생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책임의 추정을 이끌어낸다.

계약상 채무로서의 결과적 안전의무에 근거한 위험인식

행위자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기준은 앞서 언급한 1941년 7월 15일 판결¹⁶⁾ 이후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을 정의하는 데 본질적 요소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은 간혹 판례를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주기적으로 야유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1984년 6월 20일 판결에서 프랑스 대법원은 프랑스 북부 리에뱅 석탄 광산에서 갱내 가연성 가스의 발화로 치명적인 폭발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절대적으로 빈틈없는 예방을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을 기각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위험성이 익히 알려진 막다른 갱도에 가연성 가스를 감지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빠뜨린 경우에 해당했다.¹⁷⁾ 금전적 이해관계가 수많은 피해자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시된 것이다.¹⁸⁾

15) 이미 이를 예견한 저작이 있었다. Hubert Seillan, *L'obligation de sécurité du chef d'entreprise*, préface Jacques Ghestin, Dalloz, 1981.

16) 상기 각주 6번 참고.

17) Cass. soc., 20 juin 1984, Bull. civ. V, n° 259, JCP, 1985, ed. G II 20358, concl. Gauthier, Dr. Ouv., 1985, p.91. 아울러 다음 판결문 참고. Cass. ass. plen., 18 juillet 1980, D., 1980, p.394, concl. Picca, JCP, 1985, ed. G.II-19642, obs. Y. Saint-Jours.

18) 이와 관련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평 참고. "Variations sur la qualification de la faute inexcusable", Rev. dr. san. soc., 1985, p.173.



2002년 2월 28일 이후 나온 판결들¹⁹⁾은 사용자의 위험인식을 계약상 채무로서의 결과적 안전의무에 근거지움으로써 그러한 경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판례의 설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와 체결한 노동계약에 근거하여 노동자에 대해 결과적 안전의무를 부담한다.] 노동자가 노출된 위험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이를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 위험에 맞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의무의 위반은 사회보장법전 L.452-1조에서 규정한 변명할 수 없는 과실에 해당한다.”

위험의 인식은 구체적으로도 또 추상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나 그 대리인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에 대한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이를 토대로 프랑스 대법원은 최근의 판결들을 통하여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 개념의 새로운 외연과 법적 효과를 분명히 하였다. 프랑스 대법원은 여러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하나의 결정적인 과실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론을 폐기하고,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이 노동자의 산재를 유발한 하나의 원인이기만 하다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다른 과실들도 노동자가 입은 손해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¹⁹⁻²⁾ 또한 프랑스 대법원은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의 중대성에 따라 노동자의 산재보상금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¹⁹⁻³⁾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책임추정 법리

산업재해 피해자를 보상하지 않으려는 보험회사들의 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매우 일찍부터 프랑스 대법원은 1898년 4월 9일 법 하에서 책임추정의 법리를 도입했는데, 이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해서였다.²⁰⁾ 책임추정의 법리

19) 상기 각주 2번과 3번의 참고문헌 참고.

19-2) Cass. soc., 31 octobre 2002, Dr. Ouvr., 2002, p.528, Dr. soc., 2003, p.145, obs. P. Chaumette, *Dalloz*에 발간 예정인 필자의 논평 참고.

19-3) Cass. soc., 19 décembre 2002, Dr. soc., 2003, p.243, note P. Chaumette, *Dalloz*에 발간 예정인 필자의 논평, *Droit ouvrier*에 발간 예정인 Francis Meyer의 논문 참조.

20) Cass. civ., 17 février 1902, DP, 273, note LS; Cass. ch. réun., 7 avril 1921, S.1922-1-81, note Sachet.

는 현재 그 암묵적 근거를 사회보장법전 L.411-1조에서 찾고 있으며, 프랑스 대법원은 “해당 재해가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근무시간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해야 한다.”²¹⁾라고 판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재 확인했다.

산업재해 관련법에 내재한 책임추정의 법리는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이 피해자 또는 사용자 어느 쪽이나 그 원인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갖기 때문이다.

주류적 학설은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과 피해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을 그 법적 근거에서 대칭적이라고 간주하였지만, 피해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 개념은 점차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하기에 이르렀다.²²⁾ 피해자 또는 그 미망인과 자녀들을 상대로, 이들이 받을 형편없는 보상연금을 깎기 위해 피해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앞에서 언급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1976년 12월 6일 법 이후로는 사실상 사라졌다. 그 이후로 이 문제를 다룬 판례는 거의 없었다.

이처럼 피해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 개념이 사라지면서,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이 개념적 독립성을 갖게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상 채무로서의 결과적 안전의무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책임추정의 법리가 도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실제적 적용

법적인 차원에서는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에 대한 입증이 이제는 더 용이해지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심지어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 사용자의 계약상 채무로서의 결과적 안전의무 개념은 1976년 12월 6일 법이 맞닥뜨린 것과 같은 장애물, 특히 감사원이 지적한 바 있는 것과 같은 장애물

21) Cass. soc., 19 juillet 1962, Bull. civ. IV, n° 670, 그리고 이후 판례.

22) 이와 관련 상기 각주 5번에 인용한 저작들 참고. R. Jaillet, p.163, Y. Saint-Jours, p.198.



에 부딪치리란 점이 우려된다.²³⁾ 즉 다음과 같은 장애물들이다.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을 찾아내기 위한 산재보험공단의 노력은 미미하며, 피해자가 절망하거나 지친 끝에 소송을 취하하도록 유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지연시킬 목적으로 소송 전 조정절차가 실패하도록 만들기 등등...

중구난방식으로 복잡했던 절차를 간소화한²⁴⁾ 1976년 법 이전에는, 임금노동자의 건강보험제도 차원에서 인정된 사용자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은 평균적으로 연간 200건 미만이었다.²⁵⁾ 그 후로 이 수치는 연간 400건 미만이 되었다(1999년에는 391건). 지난 사반세기 동안 겨우 두 배로 증가했는데, 매년 신고되는 산업재해의 수는 수십만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앞에서 언급한 법률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실무적 차원에서는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남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비단 석면사건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다.

여하튼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여러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다른 위험의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이다.²⁶⁾ 왜 위험의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차별이 지속되는가?²⁷⁾

하지만 생각해 보자. 완전한 보상은 사회정의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위험예방보다 더 많은 비용을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하게 만든다. 이는, 계약상 결과적 안전의무 개념과 더불어 사용자로 하여금 위험의 크기와 중대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업무상 위험의 비용을 줄이고 산재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경제적 선택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입법자에게 제공한다. **□□□**

23) 다음의 감사원 보고서 참고. Cour des comptes, *La gestion du risque des accidents du travail et des maladies professionnelles*, Rapport public, février 2002, p.136.
 24) 상기 인용한 필자 연구 참고. *Le maquis de la procédure en matière de faute inexcusable*, LGDJ, 1972, p.202.
 25) 노동부 통계자료 참고. *Bulletin statistique du ministère du Travail*, 1976.
 26) 다음 문헌 참고. Laurent Milet, “Les voies de la réparation intégrale des accidents du travail et des maladies professionnelles”, *Dr. soc.*, 2002, p.840 et les références citées.
 27) 2003년 사회보장재정법(LFSS 2003)에 첨부된 보고서는 이에 대해 계속 주저하고 있다. 다음 문헌 참고. Y. Saint-Jours,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03 : l'accélération de la convergence européenne*, D., 2003, p.355.